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타법개정]

## 【제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업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27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 【제 · 개정문】

###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를 제출한”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서를 심사한”을 “심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로 하며,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제5항에 따라 신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농장명(성명)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신청 현황	가축 종류 한우 [], 젓소 [], 돼지 [], 닭 [], 기타 []		사육 마릿수 (두, 수)
	퇴비 · 액비 생산량 퇴비 : 톤/일, 액비 : 톤/일		
	작목별 재배면적 (m <sup>2</sup> )		
	퇴비 · 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m <sup>2</sup>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 · 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퇴비 · 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